

〈서평〉

Rolf Knütel 저 / 신유철 역,
『로마법 산책』(유럽법학 1), 법문사, 2008.

서울오*

1. 내용의 개관

독일을 대표하는 로마법학자 중의 한 사람인 롤프 크니텔 교수는 독일 본(Bonn) 대학 로마법 및 비교법사 교수를 역임하였다. 이 책은 그가 행한 몇 차례의 강연을 다소 손질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유럽법과 독일법의 정신적 기초로서의 로마법에 관한 것이다. 역자인 신유철 교수는 자신의 본(Bonn) 대학 유학시절부터 이미 저자와 깊은 유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책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산책’이라는 말이 풍기는 인상처럼, 이 책은 저자의 수십 년에 걸친 로마법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통찰을 아주 쉬운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로마법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든 편안하게 읽히므로, 로마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법률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매우 간명하게 이해가 쉽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 깊이가 부족한 개괄적인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책에는 로마법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명하고도 대표적인 個所(Stelle, 斷片 fragmentum,

* 이화여대 법대 조교수, romanist@ewha.ac.kr

즉 原 텍스트를 의미)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그 개소들의 번역, 그리고 크누텔 교수에 의해서 적절하게 추가된 설명들을 따라 읽다보면 독자들은 어느새 로마법의 깊이와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역시 로마법 공부의 본령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률가들이 직접 쓴 생생한 原 텍스트와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고대 로마시대의 법발견”이다. 여기에서는 로마 법률가들이 어떻게 학설법을 발전시켰나 하는 점을 아주 유명한 사례들(가령, 河中島의 문제)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결론은 로마 법률가들의 法發見의 방법이 매우 합리적이어서, 사비니가 말하는 것처럼 “개념으로 계산함”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라는 것이다.

제2장은 “로마법의 계승”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중세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에 이르는 법학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로마법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주지하듯, 중세에 법학이 재탄생하게 된 것은 로마법 대전 중의 핵심부분인 디게스타(Digesta, 學說彙纂)가 재발견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마법의 연구가 대학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하여 전 유럽으로 대학이 확산되는 과정은 동시에 로마법의 확산 또는 계승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저자는 판덱텐 법학이 로마법의 소재로부터 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형성해 냄으로써 독일 민법이 제정될 수 있는 자료와 도구를 마련했다는 말로써 제2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제3장은 “현행법 속의 로마법”으로서, 저자는 주로 독일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로마법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는 한국 민법전과 일본 민법전, 그 밖의 다른 민법전의 규정들도 언급되고 있어서, 특히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는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저자는 로마법이 현행법의 주요 개념과 기본 구조, 구체적인 규정들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4장은 “세계 속의 로마법”으로서 20세기 이후에 로마법이 세계 곳곳에 어떻게 계속해서 전파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법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로마법이 가지는 보편적 법으로서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두 요약하여, 로마법의 특징을 집중력과 함축성, 단순성과 명확성, 실용주의, 자연적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로마법적 사고의 기준이 되었던 가치와 원칙들인데, 형평, 신의, 자유, 인격의 보호, 약자의 보호, 소유의 보호, 점유의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자는 “로마법대전, 특히 디게스타보다 더 많이 의문을 해소해 주고, 내용이 풍부하며, 문제의 핵심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접근하는 法書는 없다”는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다.

요컨대,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현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로마법이 살아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그것도 아주 평이하게 논증하고 있다. 매우 적은 연구 인력에 의해서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 로마법학계의 형편 속에서, 더구나 로마법에 관한 교과서나 학술 논문만이 있을 뿐 로마법에 관한 쉬운 입문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크누텔 교수의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한국의 독자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역자의 수고는 賞讚을 받을 만하다.

2. 세부적 검토

지금부터는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독일어 번역에 관한 부분은 손색이 없이 훌륭하므로, 주로 로마법 사료의 번역이나 라틴어로 된 법률용어의 번역과 관련하여 서평자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하의 서술에 있어서 각 단락 앞의 숫자는 이 책 내의 해당하는 면수이다.

14: “사제법관”, “속인법관”, “소장형식”은 ‘신관법률가’, ‘세속법률가’, ‘소송 방식서’가 더 적합하다.

15: “교제”는 ‘교제’의 오식이다. Institutiones의 역어는 법학입문보다는 法學提要가 더 적합하다.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서의 성격을 더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게스타(Digesta)의 역어로서는 학설유취보다는 學說彙纂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學說類集, 學說集 등으로도 번역되고 있다.

18: 방주학과보다는 주석학파가 학계의 일반적 역어이다.

20: responsa의 일반적 역어는 解答이다. quaestiones는 “사례논문”이 아니라 質疑集이다. edictum은 “법무고시”가 아니라 법무관고시이다.

22: 파울루스의 저서인 de iure singulari의 번역에 있어서, ius singulare는 특별한 계층이나 개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을 말한다. 따라서 “비상법”보다는 ‘특별법’ 정도가 어떨까 한다.

24: “법무고시 주석서”는 ‘법무관고시 주해’가 더 올바르다. 일상 언어에서는 주석과 주해가 엄격한 구별 없이 쓰이지만, 법과 관련해서는 가령 중세의 주석학과 주해학파의 구별에서도 보듯이, 주석은 텍스트 자체의 이해와 해석에 주력하는 작업, 주해는 그 보다는 더 큰 맥락에서 행해지는 텍스트의 해석 작업 정도로 구별해서 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개소의 번역문에서 libro septimo digestorum을 “학설유취 주석서 제7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學說彙纂 제7권’이 올바르다. 즉, “주석서”가 아니라 학설회찬 그 자체의 7권이다. 주의할 것은 이 학설회찬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법대전 중의 학설회찬과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책이다. 여기에서의 학설회찬은 율리아누스가 단독으로 쓴 저서의 이름이고, 로마법대전 중의 학설회찬은 고전기 법률가 약 40명의 학설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다.

26: “Sabinus 주석서”는 ‘사비누스 주해’가 더 낫다. 또한 텍스트의 번역에서 pr.(즉 principium)을 “주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初項’이 올바르다. 로마법대전의 어떤 단편이 길어지는 경우 인용의 편이를 위하여 그것을 여러 단락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락(項, paragraphus)을 principium이라고 부

르기 때문이며, 이것은 ‘주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단락은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된다.

27: 학계에서는 통상 *emptio rei speratae*는 ‘희망물매매’, *emptio spei*는 ‘희망의 매매(또는 이득기회의 매매)’로 번역하고 있다.

28: *missilia*를 “하사품”으로 번역한 것은 나쁘지 않지만, 어원적 의미를 살리려면 ‘投擲喜捨物’이라는 역어가 더 나은 것 같다. 이 말은 동사 *mittere*(보내다, 던지다)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29: *lex Laetoria*는 고전 라틴어식 발음법에 따르자면 “래토리우스의 법”이 아니라, ‘라이토리우스 법’이라고 하여야 한다. *curator*는 후견인이 아니라 保佐人이다. 후견인은 *tutor*이다.

34: *affectio maritalis*는 “혼인의 선호”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이다. 이것은 35면 주 27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40: *summam tamen hanc puto esse, ut ...*는 “이러한 모든 경우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사료된다 ...”가 아니라, ‘결국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로 번역해야 한다.

41: 여기에서 그리고 이하에서 *servus*는 “노비”로 번역되고 있다. 반면 21면 주16에서는 “노예”로 번역되고 있다. ‘노예’로 통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전통법에서의 용어인 노비를 로마의 상황에 대해 사용하는 것 보다는 서양 고대사학계에서 정착된 용어인 ‘노예’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법무고시 주석서”는 ‘속주고시 주해’가 더 낫다.

42: *Noxalhaftung*을 “가인책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加害者委付(*noxae deditio*) 책임’으로 하는 것이 옳바르다. 이 점은 45면에서 “가인범인도”라고 번역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위부’로 하여야 한다.

43: *actio mandati contraria*는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訴權이므로 “수임의 소”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아니지만, 글자 그대로 번역하여 ‘위임 반대 소권’ 또는 ‘수임인 소권’으로 하는 것이 혼동의 여지가 없는 더 바람직한 역어라고 생각된다.

46: 가이우스의 책인 “일상사에 관하여”는 보통 日常法書로 번역한다.

65: “법무대관”은 ‘법무관’이 옳다. “타르페이의 언덕”은 ‘타르페이우스 언덕’이 옳다.

67: “중세 本期”는 hohes Mittelalter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학계의 정착된 표현인 ‘盛期 중세’가 더 적당하다. 각주 3에서의 “칙서”는 ‘칙법’이 옳바르다.

68: parochus putativus에서의 putativus의 의미는 “擬似”라기 보다는 ‘誤想’이다.

73: 이미 언급하였지만, Glossatoren의 역어는 “방주학자”보다는 학계의 정착된 용어인 ‘주석학파’가 낫다.

74: Kommentaren의 역어로는 “주석학자”보다는 ‘주석학파’가 더 낫다.

80: iuris praecepta의 역어로는 “법의 선험명제들”보다 ‘법의 지침’이 더 낫다.

82: Schöffen의 역어는 “鄉判”보다는 ‘參審人’ 또는 ‘參審員’ 정도가 어떨까 한다.

83: ius commune를 “공통법”으로 번역하는 것은 참신하기는 하지만, 학계의 정착된 용어인 ‘普通法’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혼동의 여지가 있다.

86: ratione imperii는 “제국에 기초하여”가 아니라 ‘황제권에 기하여’로 번역하여야 한다. 이 점은 91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imperium은 고위정무관 또는 황제의 大權(혹은 명령권)을 의미했다.

88: “방주학자들에 의하여 다시 규명되고 주석학자들에 의하여”는 ‘주석학파에 의하여 다시 규명되고 주해학파에 의하여’로 바로잡아야 한다.

92: Elegante Jurisprudenz는 “엘레강스 법학”이 아니라 ‘典雅法學’으로 보통 번역된다.

93: Usus modernus pandectarum은 “판덱텐의 현대적 활용”이 아니라 ‘판덱텐의 현대적 慣用’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7: ALR은 “프로이센 일반국법”이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관트법’, ABGB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민법전’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5: Glossa ordinaria는 “대방주서”가 아니라 ‘표준주석서’이다. 바로 뒤의 “주

석학자”는 ‘주해학파’로 고쳐야 한다.

111: *personae*는 “인격”이 아니라 人, *actiones*는 “행위”가 아니라 訴權이다.

112: *mancipatio*를 手取행위로 번역하고 있는데 라틴어의 어원(*manus* 손 + *capere* 붙잡다)을 살린 표현이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보통 握取行爲 혹은 掌握行爲라는 역어가 사용된다. *Inventar*는 라틴어의 *inventarium*에서 온 말로서 “부속용구”가 아니라 ‘재산목록’이다. 물론 *Inventar*가 從物(*Zubehör*) 혹은 附屬物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가령 §§ 582, 583 BGB). *pignus*는 “질물”보다는 ‘질권’이 더 적합하다. 질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뿐만 아니라 질권설정계약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그 제도 자체에 상응하는 역어로는 ‘질권’이 더 낫기 때문이다.

114: 개소 번역의 마지막 문장에서 “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보자. 우선 이 문장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계약이 아니라, 문답계약(*stipulatio*)가 문제되고 있다. 다음으로 라틴어 *committuntur*의 번역이 문제인데, 이것은 (계약의) 만기가 도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답계약이) 행해진다(즉,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참고로 크니텔 교수는 이를 *verfallen*으로 번역하고 있다.

117: 이 면의 마지막 문장인 *Cum quaeritur in stipulatione quid acti sit, ambiguitas contra stipulatorem est*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는 “문답계약에서 무엇이 행해졌는지 질의되는 경우, 애매함(불명확함)은 要約者에게 불리하다(불리하게 해석된다)”는 의미이다.

118: *bis dat qui cito dat*이 “빨리 주는 것은 두 배로 주는 것”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빨리 주는 자는 두 번 준다”는 의미이다.

119: 사료 부분에서 *in sacro aut in religioso loco*가 “성역이나 종교적 장소”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용어들은 *res sacrae*(神物, 가령 신전) 및 *res religiosae*(宗教物, 가령 분묘)에 상응하는 전문용어들이므로 ‘神聖地 또는 宗教地’라고 번역하여야 한다. 원래 神聖物(가령, 성벽, 성문)에 해당하는 표현은 *res sanctae*이므로, 위에서는 ‘신성지’가 아니라 ‘神地’라고 하는 것이 더 용어의 일관성을 따르는 것이겠지만, 여기에서는 굳이 신성물과의 혼동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냥 ‘신성

지'로 할 것을 제안한다. 최병조 교수도 '신성지'로 번역하고 있다.

123: 마지막 행의 “종속”은 Akzession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附屬’이 옳다.

129: 사료 부분에서 *si exigere faeneratam pecuniam non potuit*을 “예컨대 [대출의 위임을 받아] 이자부로 빌린 돈을 다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번역하였는데, 우선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대출의 위임을 받아” 금전을 “이자부로 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금전을 맡기면서 그것으로 대금업을 하라고 위임한 경우이다. 따라서 수임인이 그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요컨대, “수임인이 이자부 대금업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번역하여야 한다.

131: 여기에서 “침입장소”는 *Einbruchsstelle*의 직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로마법이 현행법에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영역’이라는 맥락이므로, ‘流入 領域’ 정도가 어떨까 한다.

132: *Dolo facit qui petit quod redditurus est*를 “바로 다시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의의 행위이다”라고 번역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여, “(청구자가 다시) 반환하게 될 바로 그것을 청구하는 자는 악의로 행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137: *Quotiens in stipulationibus ambigua oratio est, commodissimum est id accipi, quo res, qua de agitur, in tuto sit* 부분이 “계약에서 종종 불명확한 표현이 있더라도 거래한 목적에 가장 알맞게 이를 해석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의역이다.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자면, “문답계약에서 불분명한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문답계약의) 대상이 되는 그 일(res: 물건, 거래를 의미할 수도 있음)이 안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즉,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이다.

139: 이 면의 표제인 “개별 사례들”은 *Kasustik*을 번역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그 의미가 잘 와 닿지 않는다. 차라리 일반적인 역어인 ‘決疑論’이 더 나을 것 같다. 아니면 문맥을 고려하여 다소 의역하여, ‘희귀 사례’ 정도가 어떨까

한다. 제3행에서는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도 대단히 많은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따라서”라는 접속사는 문맥상 옳지 않다. 굳이 넣는다면, ‘그런데’ 혹은 ‘그러나’와 같은 逆接의 기능을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 문맥과 맞다.

150: 사료 번역의 표제사항(*inscriptio*, 즉 출처를 밝히는 부분)에서 파피니아누스의 저서 이름을 “법의 쟁점”이라고 하였는데, 원래 책의 이름은 *responsa*이므로, ‘解答集’이 타당하다. ‘해답(*responsa*)’란 법률가가 질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행한 답변을 의미하며, 현대적 의미로서는 ‘자문’이나 ‘감정’에 해당한다. 학설에 대해 法源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오늘날과는 달리, 로마법에서의 학설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 또한 *actio de dolo*는 ‘惡意訴權’으로, “소장 형식”은 ‘방식서(*formula*)’로 번역하여야 한다.

151: “*res perit creditor*”와 “*res ultima perit creditor*”에서의 *creditor*는 두 곳 모두 *creditori*의 오식이다. 또한 주 92에서 “최종 위험”은 ‘後行 위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153: “로마법상의 불법행위소송(*actio legis Aquiliae*)”에 관해 보자. 아퀼리우스法(*lex Aquilia*)이 오늘날의 일반불법행위 규정의 前身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한 訴權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 법은 타인의 노예나 四足家畜을 살해하였거나,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불태우거나 부수거나 망가뜨려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의 부분은 ‘로마법상의 불법행위소권의 하나인 아퀼리우스 소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이 면 하단의 “티베리스 강”은 ‘티베르(Tiber) 강’이 올바르다.

155: “새로 재정한 법률”에서 “재정”은 ‘제정’의 오식이다. 이 면 하단의 *actio iniuriarum*은 “侵權의 소”가 아니라 ‘인격침해 소권’이다.

156: *remissio mercedis*를 “용익임차인의 지료감액청구권”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독일 민법에서는 용익임대차(*Pacht*)와 사용임대차(*Miete*)가 구별되지만 우리 현행민법과 마찬가지로 로마법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

료감액청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158: 본문에서 두 군데, 그리고 각주 111에서 나오는 “쫓아”는 ‘쫓아’가 올바르다. ‘쫓다’는 ‘따르다’는 의미이며, ‘쫓다’는 ‘떠나도록 몰다’, ‘물리치다’의 의미인데, 이 면에서는 모두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61: *actio conducti*는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소권이므로 ‘수급인 소권’이고, “소장양식”은 ‘방식서’로 고쳐야 한다. 또한 “재판관”이 아니라 ‘심판인(*iudex*)’이다.

164: 마지막 행의 “290면”은 ‘100면(제2장의 각주 72)’가 올바르다.

165: 사료 부분의 표제사항이 번역되지 않았는데, ‘트리포니누스 논쟁집 (*disputationes*) 제9권’이다. 이하 사료 번역 부분에서 “명예법”은 ‘명예관법’이 올바르다. 명예관법이란 명예관(명예직에 해당하는 정무관)이 만든 법, 즉 법무관이 만든 법을 말하며 그 형식은 주로 *告示*(*edictum*)이다.

167: *praetor*는 ‘법무대관’이 아니라 ‘법무관’이다.

168: *commutata utilitas*는 *commutata utilitate*의 오식이다. 비록 한 글자 차이이지만, 라틴어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 차이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전자는 *changed utility*이지만 후자는 *when the utility is changed*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효용이 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169: 여기에 나오는 정의의 분류는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부터 기원한다. 따라서 철학계에서 확립된 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기하학적 정의”와 “대수학적 정의”는 각각 ‘기하학적 均等 (*Gleichheit*)’과 ‘산술적 均等’으로 하여야 하고, ‘正義’가 아니라 ‘균등’임을 주의!), *iustitia correctiva*는 ‘是正的 정의’라고 하여야 한다.

174: 각주 31의 알폰소는 스페인 Castilla 왕국의 왕이었다. 그런데 이것의 올바른 스페인어 발음은 “카스틸리아”가 아니라 ‘카스티야’이다.

176: *actio mandati directa*는 앞에서(위 43면에 관한 부분) 언급하였던 위임 반대 소권(*actio mandati contraria*)과 대칭을 이루는, 즉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권이므로 ‘위임 직접 소권’ 또는 ‘위임인 소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184: *ex aequo et bono*는 “형평과 신의칙에 따라”가 아니라 ‘형평과 쉼에 기여’이다. *bono*는 *bonum*(善)이 *ex*라는 전치사 다음에 왔기 때문에 奪格(*ablative*)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참고로 신의칙은 *bona fides*이고, 이것이 *ex* 뒤에 쓰여서 탈격 형태가 되면 *bona fide*가 된다.

195: 파울루스의 책인 *libro singulari de cognitionibus*의 번역에 있어서, *cognitio* (즉 *cognitio extra ordinem*)는 ‘특별심리절차’가 확립된 역어이므로 ‘特別審理節次論 單券’이 좋겠다. 또한 “그의 신성한 부친”은 *divo patre suo* 부분을 직역한 것인데 *divus*(神)은 이미 사망한 황제의 경우에 관용적으로 쓰이던 표현이므로, 이 부분은 ‘先皇’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다. 이 면의 중간쯤에 있는 “이는 이러한 표현이 이에 관한 원칙들의 제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심각한 오역이다. 올바르게 번역하자면, “특히나 이 (파울루스의) 텍스트가 법원칙에 관한 장(즉, 디게스타 제50권 제17장)에 수록되어있기 때문이다”로 하여야 한다.

198: 사료 번역 부분에서 “목적물의 매도 및 인도의 항변”은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이 올바르다. 또한 제1항에서 “전체 권리를”은 ‘권리를 포괄적으로’가 더 낫다. 왜냐하면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의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 *Sparsamkeit*의 번역에 있어서 “인색함”이라는 부정적 어감을 가진 표현 보다는 ‘절약정신’ 정도가 어떨까 한다. 또한 *Adoptio*은 “양자”가 아니라 ‘입양’이다.

203: *aequitas*는 “정의”가 아니라 ‘형평’이다.

204: *iniuria*는 “권리침해”가 아니라 훨씬 좁은 의미인 ‘인격침해’이다. “법무 고시”는 ‘법무관 고시’로 고쳐야 한다.

205: *casum sentit dominus*는 “우연은 소유자가 [그 고통을] 느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재고를 요한다. 여기에서 *casus*는 목적격 형태인 *casum*으로 되어 있다. 동사 *sentit*(느끼다, 겪다, 당하다)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소유자(*dominus*)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소유자가

우연한 일을 당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casus*는 우연한 일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위험(현행 민법 제537조 참조)’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accessio cedit principali*를 “주물은 종물에 따른다”라고 번역한 것은 주물과 종물이 바뀌었다. 즉, “종물은 주물에 귀속한다”라고 번역해야 한다.